



근골격계 질환

통계법 제13조(비밀의 보호등)
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
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
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
작성기관 : 한국산업안전공단

I. 질병자 정보

※ 조사표번호:

산재처리	☐ 승인 ☐ 불승인 ☐ 보류	질병과 관련된 작업의 총 근무기간	년 개월
질병명	증상을 느낀 시점	년 월부터	진단일
질병부위	통증, 쑤심, 저림 등의 불편한 증상을 느낀 신체부위는? ☐ 상지(손, 손목, 팔, 팔꿈치, 어깨, 기타) ☐ 척추(경추, 요추, 기타) ☐ 하지(발, 발목, 무릎, 대퇴부, 기타)		
발병원인	☐ 업무(작업공정) ☐ 기존질환악화 ☐ 외부충격 등 외상(사고) ☐ 취미활동·운동		
유발행위	☐ 신체반응 ☐ 과도한 동작 ☐ 반복동작 ☐ 불안전 작업자세 ☐ 진동 및 온도 ☐ 기타()		
질환 유발관련 1일 평균 작업시간	() 시간		
작업형태	☐ 들다 ☐ 쌓다 ☐ 밀다, 당기다 ☐ 운반·이동 ☐ 기타() ☐ 비작업		
질병력	과거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가? ☐ 무 ☐ 유 (질환 및 부위 :)		
※여성만 기록	출산의 경험이 있습니까? ☐ 있음 ☐ 없음 부인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? ☐ 있음 ☐ 없음		
연락처	사업장(본인)의 TEL(주소): 의료기관명: TEL:		

II. 직업력 정보

구분 \ 종사기간	예) 1961년 3월 ~ 1964년 12월	1965년 1월 ~ 1977년 3월	1977년 4월 ~ 1998년 5월	년 월 ~ 년 월	년 월 ~ 년 월	년 월 ~ 년 월
사업장명	가 사	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	영광특수 주물			
업종 및 주요생산품	자영 농업 (사과, 배 등)	석탄광업	금속제품 제조업(주물업)			
근로자수	-	500명	20명			
작업공정 (작업내용)	논농사 (과수재배)	채 광	주물사 (해체,조형작업)			
직업	농 부	채 광 부	조형공			
근무형태	☐ 정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☒ 기 타 (수시)	☒ 정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	☒ 정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	☐ 정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	☐ 정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	☐ 정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
고용형태	☒ 상용 ☐ 일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☒ 상용 ☐ 일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☒ 상용 ☐ 일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☐ 상용 ☐ 일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☐ 상용 ☐ 일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☐ 상용 ☐ 일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

※ 최종학교 졸업 이후 모든 직업력(농업, 어업, 상업 등과 같은 자영업도 포함)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.

III. 질병을 유발한 작업공정·내용과 작업방법,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.

예) 첫 증상은 ○○자동차의 ○○를 조립하는 부서 근무 중 고개를 옆으로 돌려 위를 보고,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,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동작을 반복하였을 때이며, ○○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이유는 자동차와 바닥이 가까워 고개를 높이 들고 다리를 구부려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

【 근로계약제질환 조사표 작성요령 】

※ 업무상질병조사표의 작성자는

-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복명서 등 질병관련 심의자료(요양신청서, 진단서, 의사소견서 등)
- 사망자는 「유가족 일시금 지급」 전산조회 또는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여 사망원인 등을 작성
-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방문조사에서 얻어지지 않은 정보는 사업장·의료기관 및 질병자의 전화면접 조사에 의하여 작성(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조사시 관련 전화번호 등 파악)

I. 질병자 정보

- 1 산재처리 : 산재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최종처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기재
- 2 질병과 관련된 작업의 총 근무기간 : 과거 타 회사부터 현재 경력까지 질병과 관계된 작업 또는 업무를 수행한 총 근무기간을 합하여 기재
- 3 질병명 : 수근관터널증후군, 견쇄관절 부위의 퇴행성관절염, 봉와직염, 활액낭염, 경추상완증후군, 추관판탈출증, 전완부 근육의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구체적인 질병명을 기재(의사소견서의 상병명 등 확인)
- 4 질병부위 : 손(손가락포함), 손목(완관절), 팔꿈치(주관절), 어깨(견관절), 경추(목), 요추(허리), 고관절(대퇴부), 발목(족관절), 무릎(슬관절), 대퇴부(고관절) 등 질병이 발생된 신체 부위를 기재(의사소견서 확인)
※ 상지, 척추, 하지 ☒ 하되, 세부 신체부위에 ○을 표시 할 것.
- 5 작업형태 : 질병발생시 작업의 형태를 기재하되, 기준질병악화 등 간접적인 작업요인은 「비작업」을 구분.
- 6 질병력 : 기존에 부상 또는 질환을 겪었는지 여부를 기입하되, 발생시기, 발생회수에 관계없이 과거 질병력에 대한 부상 및 질환의 신체부위 및 질병명을 기재
- 7 출산력 및 부인과 질환 : 출산력은 유산경험은 제외하여 기재하며, 부인과질환이라 함은 자궁경부염, 자궁후굴, 난소염, 자궁내막염 등 기타 자궁, 자궁경부 및 난소의 질환을 말함

II. 직업력 정보

- 8 업종 및 주요 생상품 :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을 기재하고, 주요 생상품은 해당 사업장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 업무내역을 기입(사업장등록증, 복명서 등 확인)
- 9 근로자수 : 정규, 임시, 가족근로자, 훈련생 등 급여를 받은 전년도 모든 근로자수의 월평균을 기재
- 10 작업과정(작업내용) : 질병을 발생시킨 작업과정, 작업내용을 기재
【 예 : 용해과정, 용접과정, 성형과정, 절단과정, 운반과정, 반응과정, 기계·건축물의 설치·보수과정 등 】
- 11 직업 : 각 사업장에서 평소에 수행하던 정규 직업, 직종을 기재 (표준직업분류)
- 12 근무형태 : ① 정상 : 오전 8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18시 전후에 퇴근,
② 2교대, 3교대 : 근무는 동일작업에 대하여 2개조,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형태
③ 기타 : 고정 야간 작업, 수시 근무 등
- 13 고용형태 : 근로자는 상용, 일용, 시간제, 가족으로 나뉘며, 각 고용형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.
① 상 용 :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정규직·계약직·임시직 포함
② 일 용 : 1개월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계약·임시·계절근로자 포함
③ 시간제 : 일당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: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 받지 않는 자
⑤ 사업주 : 혼자 혹은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자 ⑥ 자영업자 : 혼자 혹은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



뇌혈관·심장질환 등

통계법 제13조(비밀의 보호등)
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
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
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
작성기관 : 한국산업안전공단

I. 사업장 정보

※ 조사표번호:

산재처리	☐ 승인 ☐ 불승인 ☐ 보류	업종(주생산품)		근로자수	
------	--	----------	--	------	--

II. 재해자 정보

질병명				발병일	년	월	일
사망일시	년	월	일	시	사망장소	☐ 자택 ☐ 병원 ☐ 직장 ☐ 기타()	
사망원인	직접사인: 중간사인: 선행사인:						
입사일	년	월	일	질병과 관련된 작업의 총 근무기간		년	개월
직업				평소업무			
고용형태	☐ 상용 ☐ 일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		근무형태	☐ 정상 ☐ 2교대 ☐ 3교대 ☐ 기타()		
평소 건강상태	☐ 건강 ☐ 병은 없으나 허약체질 ☐ 지병 있었음 ☐ 미상 ※ 지병이 있는 경우 ☐ 고혈압 ☐ 당뇨병 ☐ 협심증 ☐ 심근경색증 ☐ 부정맥 ☐ 기타() ☐ 미상						
연락처	사업장(본인)의 TEL(주소) : _____ 의료기관명 : _____ TEL : _____						

III. 업무특성 정보

근무시간 (잔업포함)	발병전날(1일)	총 시간 【 ☐ 주간 ☐ 야간 ☐ 교대 】	
	발병전 3일간	총 시간 【 ☐ 주간 ☐ 야간 ☐ 교대 】	
	발병전 1주일	총 시간 【 ☐ 주간 ☐ 야간 ☐ 교대 】	
업무변화	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사태	☐ 없었음 ☐ 있었음 ☐ 미상	있었다면 내용기재
	업무량변화	☐ 없었음 ☐ 있었음 ☐ 미상 ※ 변화가 있었던 경우 ☐ 발병전 3일이내 ☐ 발병전 1주이내 ☐ 발병전 1월이내 ☐ 미상	
	업무내용 변화	☐ 없었음 ☐ 있었음 ☐ 미상 ※ 변화가 있었던 경우 ☐ 발병전 3일이내 ☐ 발병전 1주이내 ☐ 발병전 1월이내 ☐ 미상	
	업무내용 변화요인	☐ 작업량·강도증가 ☐ 근무시간 증가 ☐ 심야근무전환 ☐ 접대과잉 ☐ 인사관련 ☐ 부적응·인간관계 ☐ 기타() ☐ 없음	
유해인자	☐ 업무량증가 ☐ 교대작업 ☐ 운전작업 ☐ 외부작업환경의 변화 ☐ 업무의 스트레스 ☐ 고정야간작업 ☐ 기타() ☐ 없음		

【 뇌혈관·심장질환 등 조사표 작성요령 】

※ 업무상질병조사표의 작성자는

-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복명서 등 질병관련 심의자료(요양신청서, 진단서, 의사소견서 등)
- 사망자는 「유가족 일시금 지급」 전산조회 또는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여 사망원인 등을 작성
-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방문조사에서 얻어지지 않은 정보는 사업장·의료기관 및 질병자의 전화면접 조사에 의하여 작성(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조사시 관련 전화번호 등 파악)

I. 사업장 정보

- 1 산재처리 : 산재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최종처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기재
- 2 업종(주생산품) :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을 기재하고, 주요 생산품은 해당 사업장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업 등 비 제조업의 경우 업무내역을 기입(사업장등록증, 복명서 등 확인)
- 3 근로자수 : 정규, 임시, 가족근로자, 훈련생 등 급여를 받은 전년도 모든 근로자수의 월평균을 기재

II. 제해자 정보

- 3 질병명 : 심근경색증,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, 류마티스성 심장질환, 뇌전동맥 폐색, 대뇌동맥폐색, 뇌졸중 등의 구체적인 질병명을 기재(의사소견서의 상병명 등 확인)
- 4 사망일시·장소·원인 : 사망자에 한하여 기재하고, 가능한 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
사망원인 작성예 - 직접사인(심부전), 중간사인(부정맥), 선행사인(심근경색증)
※ 사망일시, 사망장소 등이 불확실한 경우 해당란에 “미상”으로 기재
- 5 질병과 관련된 작업의 총 근무기간 : 과거 타 회사부터 현직 경력까지 질병과 관계된 작업 또는 업무를 수행한 총 근무기간을 합하여 기재
- 6 직업 : 질병당시 수행하던 업무 등을 기술하지 말고 평소에 수행하는 정규 직업, 직종을 기재(표준직업분류)
- 7 평소업무 : 평소에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상황을 간략히 서술
- 8 고용형태 : 근로자는 상용, 일용, 시간제, 가족으로 나뉘며, 각 고용형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상 용 :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정규직·계약직·임시직 포함
 - ② 일 용 : 1개월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계약·임시·계절근로자 포함
 - ③ 시간제 : 일당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: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 받지 않는 자
 - ⑤ 사업주 : 혼자 혹은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자 ⑥ 자영업자 : 혼자 혹은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
- 9 근무형태 : ① 정상 : 오전 8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18시 전후에 퇴근,
② 2교대, 3교대 : 근무는 동일작업에 대하여 2개조,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형태
③ 기타 : 고정 야간 작업, 수시 근무 등
- 10 평소건강상태 : 평소의 건강상태를 기재하고, 지병이 있는 경우는 질병명을 기입하되, 작성자가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되 불확실한 경우는 “미상”으로 분류

III. 업무특성 정보

- 11 근무시간 : 잔업(연장근무)시간을 포함해서 「발병전날」, 「발병전 3일간」, 「발병전 1주일간」 및 총근무시간을 기재
- 12 업무 변화 : 『발병전 24시간 이내 돌발사태』는 피해자가 육체적, 정신적으로 심한 과부하를 받을 정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, 만일 있었다면 어떤 사태였는지 내용을 기재(예 : 동료나 상사 또는 고객과 업무상으로 심한 싸움을 했을 때, 운전 또는 장비 사용중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경우<앗차사고>등)
- 13 업무내용 변화요인 : ① 작업량·강도 증가 : 업무 작업량증가·경작업에서 중작업으로 전환, 잦은 업무출장
② 인사관련 : 승진누락, 구조조정, 전출·전직, 이직, 합병 등
③ 부적응·인간관계 :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성에 맞지 않아 적응이 되지 않거나 상사 및 동료등 인간관계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
- 14 유해인자 : 질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재(예 : 업무량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량 증가에 기재)
 - ① 외부 작업환경의 변화 : 한냉·온열, 소음 등 외부적인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질병등이 악화되는 경우등
 - ② 업무외 스트레스 :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(상사·동료갈등, 정신적 충격, 이혼, 놀람 등)



유해인자노출질환

통계법 제13조(비밀의 보호등)

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
작성기관 : 한국산업안전공단

I. 질병자 정보

※ 조사표번호:

산재처리	☐ 승인 ☐ 불승인 ☐ 보류	질병과 관련된 작업의 총 근무기간	년	개월
질 병 명	처음 증상 인지 시점	년	월	일
질병부위				
질병력	상기 질병 발병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까? ☐ 무 ☐ 유 (질환명:) 상기 질병 발병후 합병증 등이 있었습니까? ☐ 무 ☐ 유 (질환명:)			
가족력	부모, 형제 등 가족 중에 상기 질병과 유사한 질병을 앓은 경우가 있습니까? ☐ 무 ☐ 유 (본인과의 관계:) (질환명:)			
흡연여부	☐ 안피움 ☐ 피움(흡연기간: 년, 흡연량: 갑/일) ☐ 피우다 끊음(흡연기간: 년, 중단연도: 년)			
음주여부	☐ 안함 ☐ 음주함(음주빈도: 회/월, 음주량: 병/1회) ☐ 하다 끊음			
연락처	사업장(본인)의 TEL(주소): _____ 의료기관명: _____ TEL: _____			

II. 직업력 정보

구분 \ 종사기간	예) 1961년 3월 ~ 1964년 12월	1965년 1월 ~ 1977년 3월	1977년 4월 ~ 1998년 5월	년 ~ 월 년 ~ 월	년 ~ 월 년 ~ 월	년 ~ 월 년 ~ 월
사업장명	가 사	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	영광특수 주물			
업종 및 주요생산품	자영 농업 (사과, 배 등)	석탄광업	금속제품 제조업(주물업)			
근로자수	-	500명	20명			
작업공정 (작업내용)	논농사 (과수재배)	채 광	주물사 (해체,조형작업)			
직 업	농 부	채 광 부	주물공장 생산직근로자			
질병원인 (유해인자)	농 약	분진, 소음	분진 / 포름알데히드			
근무형태	☐ 정 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☒ 기 타 (수시)	☒ 정 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	☒ 정 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	☐ 정 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	☐ 정 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	☐ 정 상 ☐ 2 교대 ☐ 3 교대 ☐ 기 타 ()
고용형태	☒ 상 용 ☐ 일 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☒ 상 용 ☐ 일 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☒ 상 용 ☐ 일 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☐ 상 용 ☐ 일 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☐ 상 용 ☐ 일 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	☐ 상 용 ☐ 일 용 ☐ 시간제 ☐ 무급가족종사자 ☐ 사업주 ☐ 자영업자 ☐ 기타

※ 최종학교 졸업 이후 모든 직업력(농업, 어업, 상업 등과 같은 자영업도 포함)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

【 유해인자노출질환 조사표 작성요령 】

※ 업무상질병조사표의 작성자는

-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복명서 등 질병관련 심의자료(요양신청서, 진단서, 의사소견서 등)
- 사망자는 「유가족 일시금 지급」 전산조회 또는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여 사망원인 등을 작성
-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방문조사에서 얻어지지 않은 정보는 사업장·의료기관 및 질병자의 전화면접 조사에 의하여 작성(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조사시 관련 전화번호 등 파악)

I. 질병자 정보

- 1 **산재처리** : 산재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최종처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기재
- 2 **질병과 관련된 작업의 총 근무기간** : 과거 타 회사부터 현직 경력까지 질병과 관계된 작업 또는 업무를 수행한 총 근무기간을 합하여 기재
- 3 **질병명** : 백내장, 동상, 화상, 소음성난청, 감압골괴저, 폐암, 백혈병, 비종격계양, 기관지천식, 피부암, 레지 오빌라증, 라임병, 폐수종, 방광암, 치아부식증, 면폐증, 진폐증, 알레르기성 비염, 신·간장 장애, 말초·중추신경장애 등의 구체적인 질병명을 기재(의사소견서의 상병명 등 확인)
- 4 **질병부위** : 신체내부기관(폐, 기관지, 신장, 간장, 방광, 조혈기관 등), 눈, 귀, 코, 상·하지(팔, 손, 다리, 발 등), 몸통, 피부, 전신 등 질병이 발생된 신체 부위를 기재(의사소견서 확인)
- 5 **상기 질병 발병전 질환** : 상기 기재한 업무상질병이 발병하기 전 앓았던 질병 유무 및 질병명 기입
【 예 : 고혈압, 폐암, 천식, 방광암, 간염 등 】
- 6 **상기 질병 발병후 합병증** : 상기 기재한 업무상질병이 발병한 후 합병증유발 등 앓고 있는 질병 유무 및 질병명 모두 기입
※상기 기재한 업무상질병 제외

II. 직업력 정보

- 7 **업종 및 주요 생산품** :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을 기재하고, 주요 생산품은 해당 사업장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 업무내역을 기입 (사업장등록증, 복명서 등 확인)
- 8 **근로자수** : 정규, 임시, 가족근로자, 훈련생 등 급여를 받은 전년도 모든 근로자수의 월평균을 기재
- 9 **작업공정(작업내용)** : 질병을 발생시킨 작업공정, 작업내용을 기재
【 예 : 용해공정, 용접공정, 성형공정, 절단공정, 운반공정, 반응공정, 기계·건축물의 설치·보수공정 등 】
- 10 **직업** : 각 사업장에서 평소에 수행하던 정규 직업, 직종을 기재 (표준직업분류)
- 11 **질병원인(유해인자)** : 각 사업장별로 작업수행 중 취급 물질 또는 주변 작업환경에 노출된 유해인자(화학적, 물리적, 생물학적인자)를 기재
【 예 : 석탄분진, 석면, 벤젠, 톨루엔, 이황화탄소, 수은, 크롬, 납, 카드뮴, 연쇄상구균, 전리방사선 등 】
- 12 **근무형태** : ① **정상** : 오전 8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18시 전후에 퇴근,
② **2교대, 3교대** : 근무는 동일작업에 대하여 2개조,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형태
③ **기타** : 고정 야간 작업, 수시 근무 등
- 13 **고용형태** : 근로자는 상용, 일용, 시간제, 가족으로 나뉘며, 각 고용형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.
 - ① **상 용** :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정규직·계약직·임시직 포함
 - ② **일 용** : 1개월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계약·임시·계절근로자 포함
 - ③ **시간제** : 일당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자 ④ **무급가족종사자** :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 받지 않는 자
 - ⑤ **사업주** : 혼자 혹은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자 ⑥ **자영업자** : 혼자 혹은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